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00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서도원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처리비용 환수 등(안 제6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달성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관할 읍·면장이 지급하되,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인명피해		[] 사망·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①	②	③	④
	피해면적	①	②	③	④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3. 확인사항

재난보험 등 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		보장내용	
------------------	------	--	------	--

☐ 첨부서류: 관할 소방서 화재증명원 1부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뒤쪽)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달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 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 및 읍·면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